

위험의 현저한 변경

이 순 관 <보험감독원 조정역>

1. 사고의 개요

1989년 12월 5일 보험계약자 A와 보험자 B 사이에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창고에 보관중인 초콜릿 원료, 초콜릿 완제품 및 과자류 일체를 보험 목적으로 하고, 보험 금액은 9천만원, 보험기간은 1989년 12월 5일부터 1990년 12월 5일까지 1년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창고내 잡제품 등 보관 물품이 늘어남에 따라 1990년 3월 14일 위 계약의 보험목적에 잡제품을 추가하고 보험금액을 1억 7천만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

보험계약자 A는 창고내에 보관 중인 초콜릿 및 탈취제에 습기가 차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건 보험계약 당시에는 위 창고내에 제습기를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하여 왔는데 그 후 제습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창고내에 습기가 찰 때면 늘 석유난로를 피워 습기를 제거해 왔다.

그런데 1990년 4월 16일 05시 30분경 보험계약자가 야간에 위 창고내 초콜릿 등의 도난 방지를 위해 매어두었던 진도개(본건 계약 당시에는 없었음)가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화재 사고가 발생, 위 보험목적물 등이 소훼 내지는 폐손되었다.

2. 서로의 이견

보험계약자 A는 우연히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화재를 담보하는 본건 계약에 따라 당연히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자 B는 본건 계약 당시에는 위 창고내에 진도개나 석유통도 없었고, 특히 석유난로도 없었는데 본건 계약 체결 후 인화성이 강한 물질인 초콜릿 및 탈취제가 있는 창고내에 석유난로를 피운 것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법 및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면책 처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심의

동 사안은 보험분쟁 조정 신청이 있었으나 동 신청 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동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A는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날 밤 10시경 위 창고의 주인집에 인터폰으로 위 창고내에 석유난로를 켜놓고 간다고 하자, 위 주인집에서는 사람도 없이 어떻게 석유난로를 켜놓고 가느냐면서 석유난로를 켜놓고 가면 안된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석유난로에 불을 켜놓고 귀

가하였던 사실 및 피고가 개의 끈을 허술하게 매어둔 바람에 위 개가 끈을 끊고 돌아다니다가 위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A가 버려진 담뱃불에도 쉽게 화재가 발생할 정도로 인화성이 강한 초콜릿 및 탈취제 등과 석유통을 진도개와 함께 보관하면서 감시인도 없이 석유난로를 피워 둔 것은 상법 제653조 소정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하므로 B는 동 조항에 따라 위 화재보험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 바, B의 해지 의사 표시가 기대된 이 사건 1991년 1월 24일자 준비서면이 1991년 2월 5일 A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화재보험 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B는 같은 법 제65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4. 맺는 글

보험제도는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할 목적으로 같은 종류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에게 생기는 위험을 위험단체 전부에 분산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리 보험료를 각 출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한 후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 공동준비재산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준비재산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율(Probability)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험 상태가 증가되어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치므로 종전의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험의 증가·변경에 관한 문제는 보험제도의 단체적·기술적 성격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에 위험이 증가·변경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거래상의 당사자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각 나라의 보험계약에서는 위험의 증가·변경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

본건은 바로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증가에 관한 해석을 적용한 것으로, 위 조문에서는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험을 현상태로 유지시켜야 할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문에서 말하는 고의는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굳이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가리키고, 중대한 과실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현저한 부주의 때문에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라 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 유무는 주어진 정황과 구체적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손해발생 가능성이나 손해액의 증대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위험의 변경·증가는 보험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위험의 현저한 증가·변경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보험법전 L.11 3-4(위험 증가의 통지의무)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행위로 위

험을 증가시킬 경우에, 계약 체결 시에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였더라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보다 고액의 보험료로만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미리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험의 증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상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라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나 위 프랑스 보험법전과 같은 취지로 통상 해석되고 있다.

한편 상법 제659조 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항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면책 사유의 해당 유무도 검토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법원에서는 면·부책 유무 문제의 판단 이전에 제반 상황과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본건의 경우 보험기간 중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가 있다고 보고 보험자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사료된다. ●●